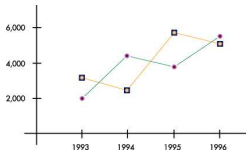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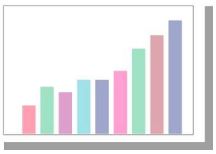

2006. 2. 23

대만의 식품 수입 관리제도

내용 문의
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
(02-2194-7462, shinilgi@khidi.or.kr)

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□ 대만의 수입식품관리제도

○ 대만 식품검사제도는 식품위생관리법에 의거 식품, 식품첨가물, 식품기구, 식품용기 및 포장, 식품용 세척제, 식품업자 등에 대한 규제와 검사 관리되어 지고 있으며, 모든 식품은 식품표준에 의거 검사기준을 삼고 있음

○ 식품의 범위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씹는 물품 및 그 원료로 정하고 있으며, 첨가물은 제조, 가공, 조미, 포장, 운송, 저장등에 사용되는 방부제, 착색제, 조미제, 표백제, 부화제등 17가지를 지정하고 있으며, 식품기구는 식품의 생산, 운송, 판매과정 중 직접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접촉이 되는 기계, 공구, 기구등을 의미함

○ 수입식품 검사 신청

- 검사 신청인은 수입식품 검사 신청서 및 수입식품 기본자료와 동 수입식품 관련 지정문서(허가 등)를 구비하여 표준검사국에 검사신청
- 동일 포장 안에 두 종류 이상의 다른 제품이 있을 물품(사탕, 비스킷, 커피, 캔, 음료, 종합선물세트 등)은 세트 안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의 명칭 등 명세서 첨부

○ 수입식품 검사 방식: 전수검사, 샘플검사, 서면검사

- 전수검사 항목

  * 이전에 불합격 규정받았던 물품
  * 육안검사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
  * 전기 검사에 동일산지, 동일브랜드가 규정 부합되지 않은 물품
  * 주관기관의 판단으로 위생안전에 재고가 필요한 물품

- 샘플검사 항목

  * 수입물품이 전수검사항목이 아닌 자로 5% 비율의 무작위 착출로 검사

  * 검사 불합격자는 차기 수입 검사 신청시 전수검사로 지정되며, 연속 5차례 전수검사에 합격이 되어야 샘플검사로 회복

- 서면검사 항목

  * 샘플검사에 합격된 물품의 나머지 부분과 상호 승인되는 외국기관의 시험보고 혹 검험증명된 물품은 서면검사로 통과되며, 단 위생안전이 고려되는 물품은 샘플검사 처리

○ 수입식품 검사샘플 선정 방법

- 수입식품이 고체의 것은 600g, 액체의 것은 1000ml을 취득하여 둘로 나누어 반은 검사용, 나머지 반은 재검사 혹 샘플 용도로 보관
- 고단가의 수입식품 검사샘플의 수량은 감량신청이 가능
- 미생물검사가 필요한 식품은 최소단위의 완전한 포장단위로 취득
- 냉동 냉장 운송식품은 컨테이너의 온도 및 포장상태 명시
- 검사샘플 수량이 미달될 경우 검사완수 불가

○ 검사작업

- 식품위생관리법 및 시행세칙, 건강식품관리법, 식품첨가물사용법위 및 용량표준, 식품위생표준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검사작업이 되며, 행정원위생서에서 공고된 방법 혹 국제기관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 등으로 검사 시행
- 표준검사국 검사집행기관은 이전기록, 제품특성 및 국내외 정보를 참작하여

중점검사항목외 표시(라벨) 혹 위생안전에 의심가는 물품은 상기법류를 근거로 관련항목별로 검사 실시

- 검사내용은 수입식품검사기록표 내용검사란에 기록되며, 특수분석 및 미생물 불합격관련 별도의 분석표가 첨가됨
- 검사결과 불합격자는 원포장상태의 샘플로 다시 별도의 조사팀이 검사를 대조

○선통관 후처리 작업

- 샘플 검사기간이 5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, 각서를 받고 선통과 후검사의 형태로 검사 진행
- 물품의 종류가 많아 샘플 취득상 식품품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, 표준검사국 관할지부의 동의 및 수입상의 각서로 선통과 후검사 처리 가능
- 물품의 부피가 너무커서 샘플 취득이 어려울 경우(150kg이상, 예로 물통 같은 용기에 담긴 식품) 선통과 후검사 처리가 가능
- 선통과 후검사처리된 물품에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, 물품이 있는 현 위치에서 유동을 봉쇄

○불합격 처리 작업

- 불합격 통지서 발급
- 재검사
  * 재검사시 남아있는 샘플로 재검사가 되며, 샘플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, 이미 품질이 변질된 물품은 재검사 불가
  * 미생물 검사에서 불합격된 물품은 재검사 불가
  * 기타 검사에 의한 불합격 물품은 재검사 신청 가능
- 재검사 신청 : 재검사 신청은 위생서 등 관련기관에 불합격 조건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고 재검사 신청이 되며, 선통과 후검사 처리 가능

- 불합격 내용통보
- 선통과 후조사 물품의 불합격 조치
  * 소각처리
  * 반송처리
- 중문표시(라벨) 불합격 물품의 조치
  * 중문표시(라벨)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수입식품검사불합격 통지서를 발급
  * 수입상은 본 통지서의 위반원인 등 개선 안을 작성 위생국 혹 표준검사국 요원의 감시 하에 개선 작업 실시
  * 검사국에서는 수입상의 개선 안을 인정하고 작업완료 후 재검사 신청 허가
  * 기 재검사 신청된 물품은 개선이 인정된 후 검사 통과